

www.i-sh.co.kr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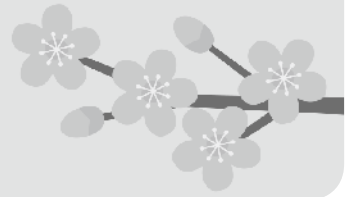
2023. 03. 3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차 례



1. 공급일정	6
2. 신청관련 문의	6
3. 공급현황	7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4
5.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7
5-1. 청년계층	18
5-2. 신혼부부 계층	21
6. 신청접수 안내	28
7.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29
8. 심사서류 제출안내	30
9.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36
10. 계약 및 입주	38
11.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39
12. 신청시 유의사항	40
13. 단지 유의사항 안내	42
14. 추가 안내	45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2023. 03. 31. 공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SH가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登記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 (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단, 장애인(본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 이하) 및 임산부를 위한 유아녀용,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생업용자동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 I, II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신혼부부 I 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II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층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은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청년(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사유가 됩니다.

□ 각 단지의 준공 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 및 입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 공고일 : 2023.03.31.(금)

청약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2023. 04.12.(수) ~ 2023. 04.14.(금)	▶ 2023. 04.24.(월)	▶ 2023. 05.08.(월) ~ 2023. 05.10.(수)	▶ 대상자 별도 통보	▶ 2023. 08.09. (수)	▶ 2023. 08.28.(월) ~ 2023. 08.30.(수)	▶ 신규 2023.09.08.(금) ~ ▶ 재공급 2023.09.06.(수) ~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공급과 재공급 입주기간이 다르니 아래 입주예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인터넷청약 주소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2023.04.12.(수)10:00 ~ 2023.04.14.(금) 17:00	www.i-sh.co.kr/app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 : 2023년 9월 ~11월

○ 신규공급 : 2023.09.08.(금) ~

- 동작구 대방동 403-14의 입주 일은 10월 이후, 중구 광희동 1가 166의 입주일은 11월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 : 2023.09.06.(수) ~ 2023.10.05.(목)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공급 : 576세대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실)	면적(㎡)				입주 (예정)	난방 방식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강동구 성내동 87-1	16	178	16.09	12.73	19.88	48.70	2023. 9월 이후	개별 난방
	33	18	33.28	25.10	41.09	99.48		
	35A	34	35.63	26.59	43.99	106.22		
	35B	34	35.37	26.67	43.68	105.72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은평구 대조동 241	36A	131	36.22	19.93	30.17	86.34	2023. 9월 이후	
	36B	121	36.24	19.89	30.18	86.32		
청계로벤하임 종로구 송인동 240-1	20	5	20.11	12.11	5.10	37.32	2023. 9월 이후	
	29	1	29.79	17.03	7.42	54.25		
	30	5	30.96	18.07	7.77	56.80		
	33	1	33.70	18.81	8.32	60.85		
	34	1	34.79	20.12	8.70	63.61		
	35	1	35.29	20.36	8.82	64.47		
	39A	1	39.29	23.85	9.96	73.11		
	39B	1	39.99	22.45	9.84	72.29		
중구 광희동1가 166	14	2	14.17	9.58	4.41	28.16	2023. 11월 이후	
		2	14.72	9.36	4.58	28.66		
		1	14.13	9.59	4.40	28.12		
	15	1	15.51	10.34	4.83	30.68		
	18	2	18.41	11.71	5.74	35.86		
		13	18.48	11.69	5.76	35.93		
골든노블레스 동작구 대방동 403-14	18	17	18.01	9.68	5.49	33.19	2023. 10월 이후	
		2	18.59	10.04	5.67	34.30		
	36	2	36.05	18.53	11.00	65.59		
		2	36.06	18.48	11.01	65.55		

■ 재공급 : 46세대

단지명	공급 유형 (㎡)	공급 호수 (실)	면적(㎡)				입주 (예정)	난방 방식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마포구 서교동 494	37 (세어형)	10	37.17	16.45	28.80	82.42	2023. 9월	개별 난방
우장산역해링턴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	23	1	23.68	11.85	16.19	51.72		
힐데스하임 성동구 용답동 233-1	14	4	14.56	10.68	4.11	29.35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39A	2	39.81	19.49	28.72	88.02		
	39B (세어형)	20	39.81	19.49	28.72	88.02		
인히어 쌍문 도봉구 쌍문동 103-6	17	1	17.52	11.15	12.46	41.13		
리마크빌 군자 광진구 중곡동 637-5	30.17	2	30.17	17.66	17.35	65.18		
	30.22	3	30.22	18.19	17.38	65.80		
	32.93	1	32.93	18.78	18.93	70.65		
더원역삼 강남구 역삼동 738-29	30.19	2	30.19	17.29	11.54	59.02		

※ 세어형 침실별 면적

단지명	공급유형 (㎡)	침실별 면적 (㎡)		
		침실1	침실2	합계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마포구 서교동 494	37(세어형)	11.24	10.80	22.04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39B(세어형)	11.62	7.65	19.27

- 침실별 면적은 실제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어형 공급안내

- 세어형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청약방식 : 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
- 금번 재공급 단지의 세어형은 기존 공급에 따라 각 호당 1실만 남아있는 경우로써(1인이 이미 입주한 상태) 2인 1팀 형태로 신청 불가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공급대상 및 신청 유의사항

- 신규 공급단지는 역세권청년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재공급 세대는 도배나 빌트인 가전 등 예전 입주자가 사용하던 상태로 공급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청약해 주시기 바라며 심각한 훼손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에 수리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신규 공급단지의 단지명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단지명,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가 표시된 약도는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의 단지별 주차대수 및 주차장 상황에 따라서 생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유자녀용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구조
강동구 성내동 87-1	서울특별시	진흥기업/효성중공업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전기) 하이플랜(통신/소방)	철근콘크리트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은평구 대조동 241	서울주택 도시공사	호반건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철근철골콘크리트
청계로벤하임 종로구 송인동 240-1	서울특별시	우암건설(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온고당	철근콘크리트
중구 광희동1가 166	서울특별시	에코21	강진건축	철근콘크리트
골든노블레스 동작동 대방동 403-14	서울특별시	(주)크라운종합건설	건축사사무소 미래건축	철근콘크리트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마포구 서교동 494	서울특별시	효성중공업(주)	주식회사 영화티스톤건축사사무소, 한국전설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
우장산역해링턴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	서울특별시	효성중공업(주)	(주)명광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
힐데스하임 성동구 용답동 233-1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원건설	-	철근콘크리트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서울특별시	(주)호반건설	(주)유일엔지니어링	철골철근콘크리트
인히어 쌍문 쌍문동 103-6	서울특별시	(주)반도건설	(주)도원엔지니어링사무소	철근콘크리트
리마크빌 군자 광진구 중곡동 637-5	서울특별시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구도건축사사무소	철근콘크리트
더원역삼 강남구 역삼동 738-29	서울특별시	(주)엠비앤홀딩스	(주)수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철근콘크리트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임대료 구분	임대료 수준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A	시중시세 30%	1순위	소득5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B	시중시세 50%	2,3순위	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C	시중시세 60%	-	소득 8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D	시중시세 70%	-	소득 10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이내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C, D는 신혼부부 II 유형에 한함.

○ 신규공급 : 576세대

단지명	공급 유형 (㎡)	평면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료 구분	임대조건			
			신청 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20%)	잔금(80%)	
강동구 성내동 87-1	16	16.09	청년	178	A	24,900	4,980	19,920	110,000
					B	41,500	8,300	33,200	183,000
	33	33.28	신혼 I	18	A	43,800	8,760	35,040	193,000
					B	73,000	14,600	58,400	322,000
	35A	35.63		34	A	45,800	9,160	36,640	202,000
					B	76,300	15,260	61,040	337,000
	35B	35.37		34	A	45,500	9,100	36,400	201,000
					B	75,800	15,160	60,640	335,000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은평구 대조동 241	36A	36.22	신혼 I	131	A	38,300	7,660	30,640	169,000
					B	63,800	12,760	51,040	282,000
	36B	36.24	신혼 II	121	C	76,500	15,300	61,200	338,000
					D	89,300	17,860	71,440	394,000

단지명	공급 유형 (㎡)	평면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료 구분	임대조건				
			신청 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20%)	잔금(80%)		
청계로벤하임 종로구 송인동 240-1	20	20.11	청년	5	A	31,800	6,360	25,440	140,000	
					B	53,000	10,600	42,400	234,000	
	29	29.79	신혼 I	1	A	43,200	8,640	34,560	191,000	
					B	72,000	14,400	57,600	318,000	
	30	30.96		5	A	44,900	8,980	35,920	198,000	
					B	74,800	14,960	59,840	330,000	
	33	33.70		1	A	47,000	9,400	37,600	208,000	
					B	78,300	15,660	62,640	346,000	
	34	34.79		1	A	47,900	9,580	38,320	212,000	
					B	79,800	15,960	63,840	352,000	
	35	35.29		1	A	48,000	9,600	38,400	212,000	
					B	80,000	16,000	64,000	353,000	
	39A	39.29		1	A	51,900	10,380	41,520	229,000	
					B	86,500	17,300	69,200	382,000	
	39B	39.99		1	A	52,800	10,560	42,240	233,000	
					B	88,000	17,600	70,400	389,000	
중구 광희동1가 166	14	14.17	청년	2	A	28,800	5,760	23,040	127,000	
		B			48,000	9,600	38,400	212,000		
		14.72		2	A	30,000	6,000	24,000	133,000	
					B	50,000	10,000	40,000	221,000	
		14.13		1	A	28,800	5,760	23,040	127,000	
					B	48,000	9,600	38,400	212,000	
	15	15.51		청년	1	A	31,500	6,300	25,200	139,000
						B	52,500	10,500	42,000	232,000
			18.41		2	A	36,300	7,260	29,040	160,000
						B	60,500	12,100	48,400	267,000
18.48	13	A	36,500		7,300	29,200	161,000			
		B	60,800		12,160	48,640	269,000			
골든노블레스 동작구 대방동 403-14	18	청년	17		A	26,300	5,260	21,040	116,000	
					B	43,800	8,760	35,040	193,000	
			2	A	27,000	5,400	21,600	119,000		
				B	45,000	9,000	36,000	199,000		

단지명	공급 유형 (㎡)	평면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료 구분	임대조건			
			신청 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20%)	잔금(80%)	
골든노블레스 동작구 대방동 403-14	36	36.05	신혼 I	2	A	47,600	9,520	38,080	210,000
					B	79,300	15,860	63,440	350,000
		36.06		2	A	47,600	9,520	38,080	210,000
					B	79,300	15,860	63,440	350,000

○ 재공급 : 46세대

단지명	공급 유형 (㎡)	평면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료 구분	임대조건			
			신청 자격	공급 호수(실)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20%)	잔금 (80%)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마포구 서교동 494	37 (세어형)	37.17	청년(남)	5	A	36,960	7,392	29,568	119,000
					B	61,600	12,320	49,280	198,000
			청년(여)	5	A	36,960	7,392	29,568	119,000
					B	61,600	12,320	49,280	198,000
우장산역해링턴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	23	23.68	청년	1	A	41,120	8,224	32,896	137,000
					B	68,533	13,706	54,827	228,000
힐데스하임 성동구 용답동 233-1	14	14.56	청년	4	A	34,000	6,800	27,200	119,000
					B	56,666	11,333	45,333	198,00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39A	39.81	청년	2	A	51,408	10,281	41,127	175,000
					B	85,680	17,136	68,544	291,000
	39B (세어형)	39.81	청년(남)	10	A	25,704	5,140	20,564	88,000
					B	42,840	8,568	34,272	146,000
			청년(여)	10	A	25,704	5,140	20,564	88,000
					B	42,840	8,568	34,272	146,000
인히어 쌍문 쌍문동 103-6	17	17.52	청년	1	A	25,100	5,020	20,080	111,000
					B	41,800	8,360	33,440	185,000
리마크빌 군자 광진구 중곡동 637-5	30.17	30.17	청년	2	A	43,200	8,640	34,560	155,000
					B	72,000	14,400	57,600	258,000
	30.22	30.22		3	A	43,200	8,640	34,560	155,000
					B	72,000	14,400	57,600	258,000

단지명	공급 유형 (㎡)	평면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료 구분	임대조건			
			신청 자격	공급 호수(실)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20%)	잔금 (80%)	
리마크빌 군자 광진구 중곡동 637-5	32.93	32.93	청년	1	A	47,080	9,416	37,664	168,000
					B	78,466	15,693	62,773	280,000
더원역삼 강남구 역삼동 738-29	30.19	30.19	청년	2	A	68,830	13,766	55,064	240,000
					B	114,716	22,943	91,773	400,000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7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구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50%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I

구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 구분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5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할증 기준표>			
	소득50% 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75%초과 시	입주자격을 “소득70% 이하”로 변경 후 이에 따른 임대조건 부과 및 할증 적용	
	소득70% 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소득9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00%초과 105%이하	40%	80%
	※ 할증 금액분은 상호전환 될 수 없음			

○ 신혼부부 II

구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 구분	- 월평균소득 80%이내인 자 - 수급계층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임대 조건	- 월평균소득 10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이내인 자 (4순위에 한함.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재계약	시중 시세 60%	
	시중 시세 70%	
재계약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6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8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P.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순위 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유형 관련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	---

신혼부부 I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II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4순위) :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5-1 청년 계층

■ 신청유형별 세부기준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나 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해당공고의 경우 1983.04.01.~2004.03.31. 출생자 지원 가능)
기 타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자 격	상세 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순위	자 격	상세 요건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구 분	기 준				
소득	기 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50%이하	2,347,719	3,003,226	3,359,099
		100%이하	4,024,661	5,505,914	6,718,198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기준
소득	-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부모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자산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2순위 : 총자산가액 : 36,100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3순위 : 총자산가액 : 29,900만원 이하(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자동차	-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이며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125CC 이하 포함),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생업용자동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생업용 차량 사용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불가
기타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배점
1 순위	①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해당되지 않음) ※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3

적용 대상	가점 항목	내용	배점
1 순위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2, 3 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④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공통	⑤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공통	⑥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
	⑦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 청약신청시 신청순위 및 신청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5-2 신혼부부 계층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두 가지로 나뉘며, 신혼부부 I 은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II 는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I

- 공고일 현재(2023.03.3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 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자격요건 내용 중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합니다.

○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신혼부부 I 자격 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u>자녀가 있는</u>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u>자녀가 없는</u>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구분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50%이하, 소득7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table><tr><th>소득 기준</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비고</th></tr><tr><td>50%이하</td><td>3,003,226</td><td>3,359,099</td><td>3,811,028</td><td>4,020,246</td><td>임대조건 : 시중시세 30%</td></tr><tr><td>70%이하</td><td>4,004,301</td><td>4,702,739</td><td>5,335,439</td><td>5,628,344</td><td>임대조건 : 시중시세 50%</td></tr><tr><td>90%이하</td><td>5,005,376</td><td>6,046,378</td><td>6,859,850</td><td>7,236,443</td><td>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td></tr></table>	소득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고	50%이하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70%이하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90%이하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소득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고																			
	50%이하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70%이하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90%이하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50%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임																									
※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자산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각 소득구분별로 가구당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330,573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462,802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90%이하) 1인당 평균금액(595,032원)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총자산가액 : 36,1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이며,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 125CC이하 포함),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구분	기준
자동차	▶ 생업용자동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해당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세대구성원이 소유한 경우 자동차 미소유로 판단함. ※ 모집공고일 당시 생업용 차량 사용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불가
기타 사항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예비신혼부부는 미적용

■ 신혼부부 II

○ 공고일 현재(2023.03.31.)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 II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의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4순위)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자격요건 내용 중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합니다.

○ 순위 별 자격요건

순위	신혼부부 II 자격 요건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u>자녀가 있는</u>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u>자녀가 없는</u>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구분

기준

순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3
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시 수급계층, 소득80%이하,
소득10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현재가치기준)

4
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시 수급계층, 소득80%이하,
소득120%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7,900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

*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에 한하여 산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원)

소득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비고
80%이하	4,504,838	5,374,558	6,097,645	6,432,394	- 1~3순위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60%)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3순위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 1~3순위(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 4순위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140%이하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 4순위(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임

※ 2인 가구는 기준금액에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각 소득구분별로 가구당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80%이하) 1인당 평균금액(528,917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인당 평균금액(793,376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40%이하) 1인당 평균금액(925,605원)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이며,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 125CC이하 포함), 유자녀용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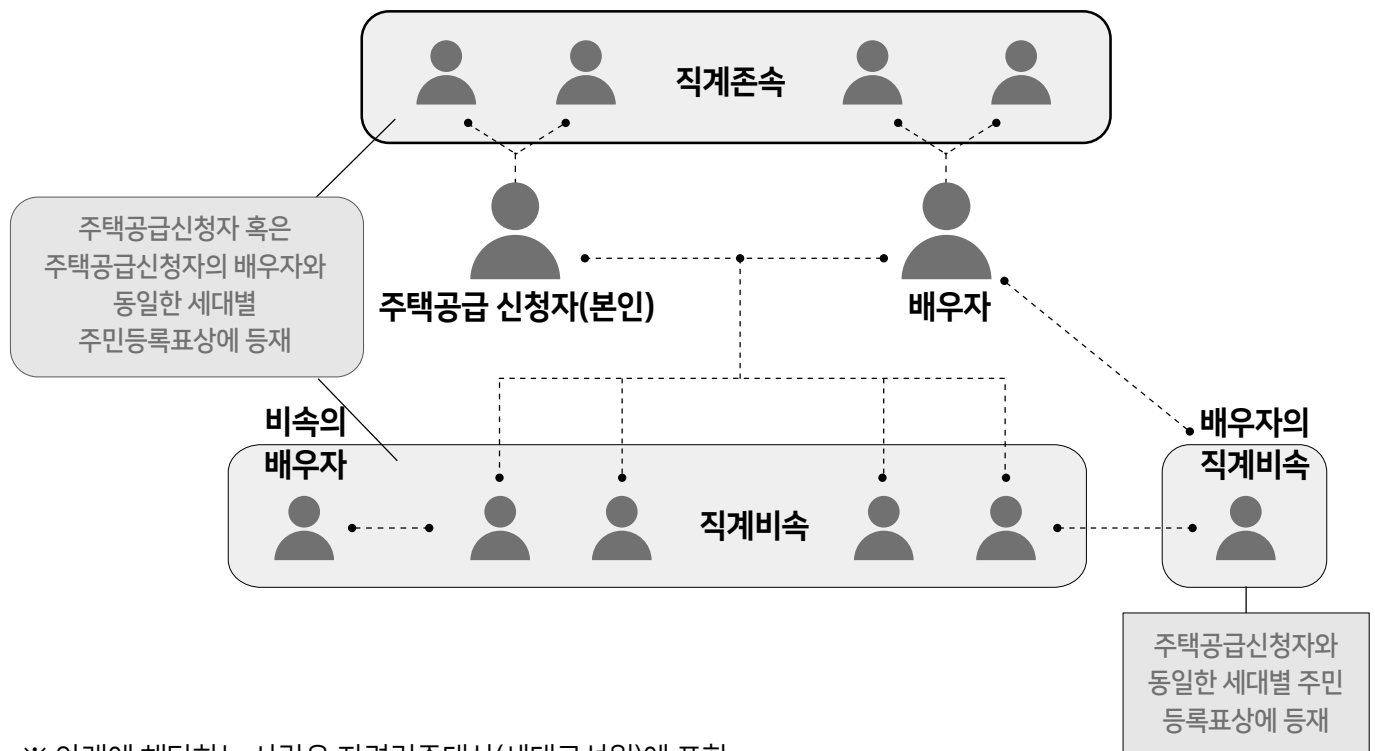
구분	기준
자동차	▶ 생업용자동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해당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세대구성원이 소유한 경우 자동차 미소유로 판단함. ※ 모집공고일 당시 생업용 차량 사용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불가
기타 사항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예비신혼부부는 미적용

■ 공통사항(신혼부부 Ⅰ, Ⅱ)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판별합니다.
- 주택소유, 중복입주, 소득·자산기준 등의 적격여부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배우자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청자의 자녀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인정)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가점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점 3점 2점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로만 한정)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③ 서울시 거주자(신청자에 한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공고일 기준)	2점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㉔지적장애인, ㉞정신장애인, ㉟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2점

※ 청약신청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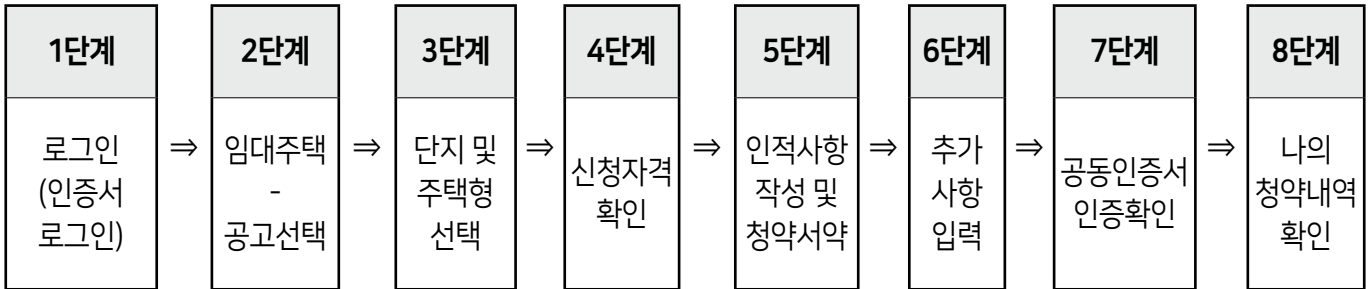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무작위 추첨

■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기간 : 2023.04.12.(수) 10:00 - 2023.04.14.(금) 17:00

○ 신청순서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 발급/소지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이니텍,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 모바일청약도 가능하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시 신청 순위 및 신청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구분에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예비)자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동차, 자산기준 등), 주민등록번호, 신청순위, 신청유형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예비) 취소되어 계약이 거절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일시	2023. 4. 24.(월) 16:00 이후
	방법	○ 조회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1600-3456 → 4번(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1번(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입력 ※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발송 예정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신청순위 순서대로 2배수 내외로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 배수 내 순위 및 가점사항 총점이 동일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3.05.08.(월) ~ 2023.05.10.(수)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 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5.10.(수)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소지가 있어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불가
	주소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역세권청년주택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서류 제출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는 개인 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한글 정자체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년계층

○ 공통 제출서류(필수)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정자체)서명 ○ '부모 무주택 가점(2점)' 해당자 및 2순위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 시 :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붙임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 복지센터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서류에 한함	행정 복지센터
(1순위)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행정 복지센터
2, 3순위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순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3순위 : 신청자 본인의 (정자체)서명(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서명)	붙임양식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급
2, 3순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가능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서명대상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⑤ 부모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⑥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없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불임양식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 타지역 출신: 신청자 부모(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 복지센터
자동차 관련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본인) 사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 등에 참여중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1부 -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5페이지 참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 이륜자동차(125cc이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 임신부를 위한 자동차 사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불가	

○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 서류	내 용 (해당자만 제출)	발급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참조	행정 복지센터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행정 복지센터

※ 가점사항 중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신혼부부계층

○ 공통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 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주의)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반드시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실제 혼인내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필수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로 발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중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불임양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①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불필요) ※ 예비신혼부부는 반드시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가능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서명대상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반드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분리배우자, 예비 신혼부부)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u>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반드시</u>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 복지센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배우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모집공고일 이후</u>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u>임신진단서</u> 제출 (임신헌인서는 불인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행정 복지센터
세대구성 확인서 (세대분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 구성 확인서를 추가 제출	불임양식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정자서명 또는 날인	
신청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로서 청약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정자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관련 모든 행위를 신청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정자서명 또는 날인 ※ 추가제출 서류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인감날인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 자필서명 시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본인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및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예비 신혼부부)	○ 위임장 서명방식과 일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발급분 ○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각각 제출(총 2부)	행정 복지센터
신분증 사본 (예비 신혼부부)	○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각각 제출(총 2부)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해당 자격	제출서류 및 내용	발 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u>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행정 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u>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u>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행정 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u>수급자 증명서</u> ○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u>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행정 복지센터
장애인	○ <u>장애인증명서</u>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배우자가 ㉔지적장애인, ㉕정신장애인 및 ㉖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증명서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중증 장애인의 기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제출로 인정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행정복지센터
자동차 관련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본인) 사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 등에 참여중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1부 -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5페이지 참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 이륜자동차(125cc이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 임산부를 위한 자동차 사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불가	

■ 입주자격 및 가점사항 부적격 소명

일시	○ 2023.7월 중 [금융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법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가점사항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유의사항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9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호(실)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실)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실)교환도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 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자동차 및 무주택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이뤄집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1배수 내외(공급호수 별로 다름)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며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예비입주자로서 다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공급 일정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	--

■ 당첨자발표

일 시	○ 2023.8.09.(수) 예정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방 법	○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문자(SMS) 전송 ○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 ARS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 당첨자 조회 ○ ARS당첨자(☎1600-3456) 확인방법 → 4번(ARS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2번(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입력 → 당첨확인 ○ 당첨자 계약 안내 서류 및 계약금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유의사항	○ 서류심사 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SMS) 안내하며, 최종 당첨자에게는 계약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공실여부 관계없음)의 호실로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계약

일시	○ 2023.08.28.(월) - 2023.08.30.(수) [계약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 서약서(무주택 및 당첨자격 확인 서약) : 공사 소정양식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①~④)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상호전환	○ 보증금 ↔ 임대료 전환은 계약 완료 후 입주 전까지 해당지역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자동차 소유(사용)와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기간	○ 신규공급 : 2023.09.08.(금) ~ ※ 동작구 대방동 403-14의 입주 일은 10월 이후, 중구 광희동 1가 166의 입주일은 11월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 2023.09.06.(수) ~ 2023.10.05.(목)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공급과 재공급 입주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이후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어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령한 잔금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희망일 1~2주 전 해당지역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 금융권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동호 및 면적) 수정은 불가합니다.

■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①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②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할 경우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 자산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아울러 청약시 기재하지 못한 태아, 자녀 수는 소득산정시 가구원 수에서 제외되며 서류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심사서류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명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조회 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됨

구분	유의사항
예비 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안내	○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실)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주택을 주거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유 숙박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 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주차장 운영 및 커뮤니티 시설 계획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차장 면수(기계식 포함)의 15%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일부단지는 공사 단계 및 상황 등에 따라 단지별 유의사항 안내가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후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소유(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아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함.)
- 역세권청년주택의 단지별 주차대수 및 주차장 상황(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 등)에 따라서 생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유아녀용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지는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주 출입구, 부 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표기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계획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발코니면적에 따라 동일 전용면적이더라도, 실 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부여되는 단지명, 지번, 도로명주소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사용검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게시된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 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옥상조경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경사로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동별 배치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공간 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로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가 상이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귀책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겨울철 입주 시에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인해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청년지원시설 등)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 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하며, 입주 전까지 공간 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관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고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14

추가 안내

■ 전자팸플릿

- 임대주택의 위치, 평면도, 단지 유의사항(세부사항) 등을 전자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공급 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팸플릿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연락처

지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남부 자산처	관악동작센터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02-828-5100~1
	강남서초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5 썬라이더빌딩 4층	02-2086-9800~1
	강동센터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6길 51(상일동) 다올빌딩 5층	02-6946-3600~1
	송파센터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버튼관 9층(s19호)	02-3400-4700~1

지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서부 자산처	강서센터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10단지 M-Tower(오피스동) 2층	02-2657-8100~1
	구로금천센터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02-6, 3층(천이타워 3층)	02-6340-9000~1
	양천영등포센터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02-2620-6700~1
	마포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0층	02-380-0100~1
	용산센터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101동 2층	02-2087-6001
	은평중로서대문센터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5-34 3층	02-6910-9400~1
동북 자산처	성북강북센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11층)	02-944-8000~1
	성동중구센터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8층	02-6909-9300~1
	노원도봉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88 우리빌딩(기업은행상계역지점) 4층	02-3399-0000~3
	동대문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5층, 6층	02-6496-5400
	광진중랑센터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 상가 201호	02-490-1700~1

2023. 03. 3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신청자 본인 및 부모 서명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소득 및 자산 출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대장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사업 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 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 산	기타 자산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구분	총자산 기준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구분		총자산 기준
총 자산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해당세대 [단, '청년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부모주택 가점신청자는 부모도 포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MEMO





MEMO

MEMO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